

「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3. 4. 29. 개정 판 (시행 2013. 3. 1.) → 2017. 9. 1. 개정 판 (시행 2017. 9. 1.)

바뀜 7 · 신설 0 · 삭제 1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211/compare?from=525&to=785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2:08:30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지원센터(영문명: Career Development Center, 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-04-29>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취업진로지원센터(영문명: Career Development Center, 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-04-29>
제2조	제2조 삭제
제4조(조직)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, 팀원들로 구성하며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. ① 센터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된다.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,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. <전문개정 2013-04-29>	제4조(조직) 본 센터에는 센터장과 팀장, 팀원들로 구성하며,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있다. ① 센터장은 <u>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.</u> <개정 2018-01-17> ②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,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 ③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. <전문개정 2013-04-29>
제5조(구성) <u>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그 구성으로는 센터장을 위원장, 팀장을 서기로 하고, 위원으로는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, 재무실장으로 한다.</u> <전문개정 2013-04-29>	제5조
제6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전문개정 2013-04-29>	제6조
제8조(이용)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취업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<전문개정 2013-04-29>	제8조(이용) 센터의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 ①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② 진로 및 취업 관련 학생활동의 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<u>취업진로지원센터</u> 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 <전문개정 2013-04-29>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회계) 회계와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. <개정 2013-04-29>	제9조(회계) 회계와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삼육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. <개정 2013-04-29>
제10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3-04-29>	제10조(운영세칙)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 <전문개정 2013-04-29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취업지원센터(영문명)"을 "취업진로지원센터(영문명)"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학생지원처장이 된다."를 "본 대학교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18-01-17>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"구성"을 삭제한다.

제5조 중 "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그 구성으로는 센터장을 위원장, 팀장을 서기로 하고, 위원으로는 교무처장과 산학협력단장, 재무실장으로 한다. <전문개정 2013-04-29>"를 삭제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기타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항

제9조 중 "예·결산"을 "예·결산"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취업지원센터장이"를 "취업진로지원센터장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